

분류기호 문서번호	주택30411-254	기안종지 (전화: 94-4825)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9.5.3.1.	구청장 구청장 5.12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88. 5.		
보조기관	부청장 주택과장	협조기관 주택과장	문서부제 검열 1988. 5. 20 종제
기안책임자	김경상		발수승 1988. 5. 20 승방
경유 수신 참조	관안참조	발신필의	1988. 5. 20 재(27)호
제부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제1안 (내부결재)	1. 우택구 관내 신내동·449 - 1 번지상에 범침과 같이 민영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주택건설 추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 하고자 합니다		
	2. 승인 내역		
	가. 사업부제 : 경원주택 장영구 외 4인		
	나. 사업위치 : 종방구 신내동 449 - 1 호		
	다. 규모 : 아파트 5층 2동 80 세대		
	라. 내역 : 범 침		
	마. 기 타 : 승인조건 범침		
	첨부 : 민영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내역 1 부		
제2안			
수신	동대문구 답십리 492 - 1 장영규외(경원주택)		
제부	감은건		

주택과에 보낸
주택과장
주택과장
주택과장

완공
주택과장

1.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중랑구 신내동 449-1번지상에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2. 동 사업계획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 5 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도시계획법 제 4 조 제 12 조 제 24 조 제 25 조
규정에 의한 검정승인 또는 허가료 부담이오니 위관련 법령규에 의한 우리구의
지도감독을 받아 착공 중(단)도 및 준공 보고등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사업시행에 따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서류 고부르게 하오니
민원생략 기하철 공적 책임부담을 제출우 고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내역

지계

구 분	구 모			대지면적 (㎡)	건축면 면적 (㎡)	건폐 율 %	용적률 %	비고
	동 수	층 수	가구수					
아파트	2	5	80	3,563	5,693 ²⁰	28.34	133.82	
관리사무실	1	1			20			

첨부 : 승인조건 7 부 (별첨)

제 3 압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같은 건

1. 아래와 같이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어 주택건설촉진
법 제 33 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5 조의 건축허가 및 도시계획법 제 4 조 제 12
제 24 조 제 25 조 에 의한 검정승인 또는 허가료 부담하는 사업계획승인을 하였
기 문보 하오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승인내역

각 사업주 체 : 영원주택개발구획 4 인

나. 건설위치 : 중랑구 신내동 449-1

승인요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 5의 규정에 의거 고시

감보 (시보) 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민영주택사업 계획승인내역 1 부

2. 민영주택사업 계획고시안 1 부

고 시 안

서울특별시 제 호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 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449 - 1

번지 지상에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별첨 시행령 제 32 조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

서 율 . 목 . 록 . 시 . 양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2. 사업주체 : 경원주택 장영구 외 4 인

3. 사업시행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치 : 중랑구 신내동 449 - 1

나. 대지면적 : 3.563

다. 구 모 : 아파트 5 층 2 동 80 세대

4. 사업기간 : 88. 5 - 89. 5



제 6 안

수 신 : 수 신 처 참 조

계 목 : 민영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1. 우리구에 제출된 중판구 신내동 449-1번지상 민영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 추진법 제 33조 규정

에의기 건축법 제 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 및 도시계획법 제 4 조 제 2조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 승인 또는 허가 품 가 품 하 니 기 승 부 된

십 제 도 서 에 의 기 불 면 제 법 구 및 규 정 에 따 라 적 소 및 중 간 감 사 는 필 요 시 업 시 행

에 필 요 한 조 치 를 합 것 이 며

2. 사업 승인 내역 및 승인 조건 등을 검토 하여 불 면 필 요 영 에 의 배 된 이

없 도 록 지 도 감 독 에 설 제 를 기 함 기

첨 부 1. 민영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내역 1 부

2. 공 고 안 1 부

3. 승 인 조 건 1 부

수 신 처 : 도시경미과 . 건축과 . 공 원 녹 지 과 . 토 목 과 . 수 도 공 사 과 .

환 검 과 . 신 내 동 사 무 소

김영
1988. 5. 20
총서장

1285

고 시 안

서울특별시 지 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내 동 449번 일지 1 2외 1필지상에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3조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68. 5. 31.

서울특별시청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 사업 승인
2. 사업주체 : 강원주택건설규격사업인
3. 사업시행지 및 위치 면적 규모
 - 가. 위치 : 강남구 신내동 449번 1
 - 나. 대지면적 : 3,963
 - 다. 규모 : 약 10층 건물 20세대
4. 사업기간 : 68. 5. 31. - 69. 5. 31.



민영주택 사업계획 승인 내역

1. 사업주체 : 강원주택경영규외4인
2. 사업위치 : 종방구 신내동 449-1호
3. 사업량 : 아파트 2동 5층 80세대
4. 사업비 : 2,077,200
5. 규모 및 사업비 : 별첨
6. 재원
 - 1) 국민주택자금 천원
 - 2) 금융자금 천원
 - 3) 입주자부담금 천원
 - 4) 사업주체자금 2,077,200 천원
 - 5) 주택은행민영자금 천원
 - 6) 기바자금 천원
7. 사업기간 : 88. 5. - 89. 5.
8. 부대시설 및 부대시설 : 별첨
9. 조 건 : 별첨